

의안번호	제1029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5월 30일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29
----------	------

발의연월일 : 2025년 5월 30일

발의자 : 변종오, 이태훈, 노금식,
김호경, 박용규, 임영은,
황영호

1.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련하여 기축 시설,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도민의 시설구축 부담 완화와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나. 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시장·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6조제1호에 따른 시설에 충전시설을 5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1기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축시설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급속충전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 ⑤ (생략)

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급속충전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생 략”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현황·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⑦ “생 략”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련하여 기축시설,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통해 도민의 시설 구축 부담 완화와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이에 조례 개정안이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